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 제662호 2018. 9. 12.(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06호 수승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 ··································	
거창군 고시 제2018-107호 도로명주소 고시······· 9	

공 고

회					
람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고시 제2018 - 106호

# 거창 수승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거창 수승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및 위천면사무소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9월 7일

## 거 창 군 수

1. 관광지명 : 거창 수승대 관광지

2.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강천리 일원

3. 지정면적 : 297,679㎡(변경없음)

4. 사업기간 : 2018년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승인관련 도서 : 세부사항은 문화관광과, 위천면사무소 비치 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내용

구 분	토지	이용계획변경	∄(m²)	관광시설	건축연면적	비고
т с	기 정	변 경	변경후	(동)	(m²)	01.77
총 계	297,679	_	297,679	59	15,949.6	
공공편익시설지구	33,508	감) 7,927	25,581	18	3,248.6	
숙박시설지구	1,078	_	1,078	1	2,083	
상 가 시 설 지 구	5,696	_	5,696	11	1,530	
운동오락시설지구	20,179	_	20,179	4	3,687	
휴양문화시설지구	29,659	증) 8,384	38,043	24	5,401	
기 타 시 설 지 구	207,559	감) 457	207,102	1	_	

# 거창 수승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서

# □ 조성계획(변경)승인 조서

O 위 치: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강천리 일원

○ 지정면적 : 297,679㎡(지정일자 : 1986. 8. 20)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기 님		토지이	용계획(m²)	)	관광시설	건축연면적	비고
	구 분	기 정		변경	변경후	(동)	(m²)	미끄
총계		297,679			297,679	59	15,949.6	
	소 계	33,508	감)	7,927	25,581	18	3,248.6	
	관 리 사 무 소	3,243			3,243	1	345	
	취 사 장	199			199	2	167	
	화 장 실	535			535	5	369	
공 공	샤 워 장	157			157	2	80	
편익 시 설	상 수 도	288			288	1	196	
지구	오 수 처 리 장	216			216	2	366	
	다 목 적 광 장	4,062	감)	138	3,924	2	1,600	
	도 로	11,897	증)	281	12,178	_	_	
	주 차 장	12,461	감)	8,070	4,391	2	50	
	안 내 소	450			450	1	75.6	
숙박	소 계	1,078			1,078	1	2,083	
시설 지구	여관 및 복합시설	1,078			1,078	1	2,083	
2]]	소계	5,696			5,696	11	1,530	
상가 시설	상 가	2,753			2,753	4	1,267	
지결	매 점	501			501	2	180	
241	전 통 시 장	2,442			2,442	5	83	
	소계	20,179			20,179	4	3,687	
운동	모 험 시 설	1,655			1,655	1	660	
오락	간 이 수 영 장	11,001			11,001	_	_	
시설	썰 매 장	3,596			3,596	1	1,440	
지구	장비보관소	39			39	1	37	
	어린이놀이시설	3,888			3,888	1	1,550	
	소계	29,659	증	8,384	38,043	24	5,401	
	목 재 체 험 장	4,472			4,472	1	1,422	
ት ለኔ	조 경 휴 게 지	5,791			5,791	2	2,360	
휴양 므치	구 연 서 원	7,459			7,459	9	296	
문화 시설	요 수 정	79			79	1	35	
지구	원 각 사	1,436			1,436	6	250	
	야 외 공 연 장	4,237			4,237	2	943	
	야 영 장	2,586			2,586		_	
	오 토 캠 핑 장	3,599	증)	8,384	11,983	3	95	
7) -1	소 계	207,559	감)	457	207,102	1	_	
기타	자연취락용지	11,679			11,679	_	_	
시설 지구	무지개다리(현수교)	233			233	1	_	
111	녹 지	195,647	감)	457	195,190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	면적(m²)			최초	비고
TE	번호	ΤΠΟ	지구크제正	חאו	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0174
기정	16	수승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 휴양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1 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	297,679	-	297,679	1986.8.2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ਜ ਦ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경비(%)	01 77
Я	297,679	-	297,679	100.0	
계획관리지역	297,679	-	297,679	100.0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도면표시	지구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	면적(m²)			최초	비고
	번호		지구의제단		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기정	15	수승대 관광지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1 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	297,679	-	297,679	1986.8.20	

###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1.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u>!</u>	토지이용계획(㎡)	)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Я	297,679	_	297,679	100.00		
I .관광휴양시설용지	68,524	증) 8,384	76,908	25.84		
Ⅱ.공공시설용지	33,508	감) 7,927	25,581	8.59		
Ⅲ.녹 지 용 지	195,647	감) 457	195, 190	65.5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총계	297,679	_	297,679	100.00	
		소계	68,524	증) 8,384	76,908	25.84	
	1	여관 및 복합시설	1,078	_	1,078	0.36	
	2	상가	2,753	_	2,753	0.92	
	3	매점	501	_	501	0.17	
	4	모험시설	1,655	_	1,655	0.55	
	5	간이수영장	11,001	_	11,001	3.70	
	6	썰매장	3,596	_	3,596	1.21	
	7	장비보관소	39	_	39	0.01	
1.	8	어린이놀이시설	3,888	_	3,888	1.31	
관광 휴양	9	조경휴게지	5,791	_	5,791	1.95	
# 8   시설	10	구연서원	7,459	_	7,459	2.51	
용지	11	요수정	79	_	79	0.03	
	12	원각사	1,436	_	1,436	0.48	
	13	야외공연장	4,237	_	4,237	1.42	
	14	야영장	2,586	_	2,586	0.87	
	15	자연취락용지	11,679	_	11,679	3.92	
	16	무지개다리	233	_	233	0.08	
	17	오토캠핑장	3,599	증) 8,384	11,983	4.03	
	18	전통시장	2,442	_	2,442	0.82	
	19	목재체험장	4,472	_	4,472	1.50	
		소계	33,508	감) 7,927	25,581	8.59	
	1	관리사무실	3,243	_	3,243	1.09	
	2	취사장	199	_	199	0.07	
	3	화장실	535	_	535	0.18	
비. 공공	4	샤워장	157	_	157	0.05	
00 시설	5	상수도	288	_	288	0.10	
용지	6	오수처리장	216	_	216	0.07	
	7	주차장	12,461	감) 8,070	4,391	1.47	
	8	도로(보도포함)	11,897	증) 281	12,178	4.09	
	9	다목적광장	4,062	감) 138	3,924	1.32	
	10	안내소	450	_	450	0.15	
III .	소계		195,647	감) 457	195,190	65.57	
''' ·   녹지	1	원지형보전녹지	168,214	_	168,214	56.51	
용지	2	완충녹지	4,942	_	4,942	1.66	
	3	조성녹지	22,491	감) 457	22,034	7.40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면적(㎡)	בור	번호	획 지		비고
번호	27(")	71.7	<u> </u>	위 치	면적(㎡)	01.15
		기정	I -1	황산리 753-2번지 일원(여관 및 복합시설)	1,078	
		기정	I -2	황산리 756-2번지 일원(상가)	2,753	
		기정	I -3	강천리 8번지 일원(매점)	501	
		기정	I -4	강천리 3번지 일원(모험시설)	1,655	
		기정	I -5	강천리 790번지 일원(간이수영장)	11,001	
	기정	기정	I -6	강천리 3번지 일원(썰매장)	3,596	
		기정	I-7	강천리 3번지 일원(장비보관소)	39	
		기정	I -8	강천리 79번지 일원(어린이놀이시설)	3,888	
		기정	I-9	황산리 758번지 일원(조경휴게지)	5,791	
_	68,524 m²	기정	I -10	황산리 769번지 일원(구연서원)	7,459	
I	↓ 변경	기정	I -11	황산리 766번지 (요수정)	79	
	76,908 m²	기정	I -12	황산리 765-1번지 일원(원각사)	1,436	
		기정	I -13	황산리 758번지 일원(야외공연장)	4,237	
		기정	I -14	강천리 3번지 일원(야영장)	2,586	
		기정	I -15	황산리 737번지 일원(자연취락용지)	11,679	
		기정	I -16	황산리 890번지 일원(무지개다리)	233	
		기정	I -17	황산리 824번지 일원(오토캠핑장)	3,599	
		 변경	I -17	황산리 824번지 일원(오토캠핑장)	11,983	
		기정	I -18	황산리 571-2번지 일원(전통시장)	2,442	
		기정	I -19	황산리 814번지 일원(목재체험장)	4,472	

도면 표시	면적(㎡)	ר ור	번호	획지		비고
변호	전약(m)	バナ	· 단호	위 치	면적(㎡)	0174
		기정	П-1	황산리 750-3번지 일원(관리사무소)	3,243	
		기정	П-2	황산리 814번지 일원(취사장)	199	
		기정	П-3	황산리 565번지 일원(화장실)	535	
		기정	П-4	강천리 3번지 일원(샤워장)	157	
		기정	П-5	황산리 758번지 일원(상수도)	288	
	기정 33,508㎡ Ⅱ ↓	기정	П-6	황산리 571-2번지 일원(오수처리장)	216	
п		기정	П-7	황산리 565번지 일원(주차장)	12,461	
	변경 25,581㎡	변경	П-7	황산리 565번지 일원(주차장)	4,391	
		기정	П-8	황산리 906-2번지 일원(도로)	11,897	
		변경	П-8	황산리 906-2번지 일원(도로)	12,178	
		기정	П-9	황산리 822번지 일원(다목적광장)	4,062	
		변경	П-9	황산리 822번지 일원(다목적광장)	3,924	
		기정	П-10	황산리 565번지 일원(안내소)	450	
	기정	기정	Ⅲ-1	강천리 산1번지 일원(원지형보전녹지)	168,214	
	195,647 m²	기정	Ⅲ-2	황산리 823-3번지 일원(완충녹지)	4,942	
"	· 변경	기정	Ⅲ-3	황산리 809번지 일원(조성녹지)	22,491	
	195,190 m²	변경	Ⅲ-3	황산리 809번지 일원(조성녹지)	22,034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거창군 고시 제2018 - 107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8. 9. 12.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병산1길 243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O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ᄌᄓᄌᄾ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C 크레 텔 시 시 O	비고
번호	번호	도로명주소 -	도로명	도로명주소	도로명부여사유	0174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62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388-36	2009-07-02	2018-09-1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180-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당산말길 59-11	2009-04-01	2018-09-12	당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84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병산1길 243	2009-04-01	2018-09-12	마을 뒷산이 병풍과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8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2길 92-85	2009-04-01	2018-09-12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국사봉 남쪽 기슭에 자리한 한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 거창군 공고 제2018 - 1091호

# 『주상 오무동 굴곡도로 개량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상 오무동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주상 오무동 굴곡도로 개량공사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주상면 오무마을 일원

다. 사 업 내 용 : 굴곡도로 선형개량 L=437.0m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도로담당)

#### 2. 보상내용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주상면 오무마을 일원(붙임참조)

나. 지 장 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9. 10. ~ 2018. 9. 25.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3)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조서(토지명세)

#### 토지의 명세

				현실	전체	펴이	관 계 인	1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면적 ( m²)	편입 면적 ( m²)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합계	7 필지			7,157	878		4인		
1	주상면 내오리	174-3	도로	도로	554	554	경남 거창군 주상면 오무1길 35-4	이옥수		
2	주상면 내오리	173-2	답	답	1,615	14	경남 거창군 주상면 오무2길 12	정계상		
3	주상면 내오리	173-3	답	답	1,102	26	경남 거창군 주상면 오무2길 12	정계상		
4	주상면 내오리	191	답	답	2,436	4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2안길 66, 203동 1011호 (진천동, 월배2차 귀빈타운)	이상현	근저당 (북부농업 협동조합)	
5	주상면 내오리	192	답	답	532	85	경남 거창군 주상면 오무1길 35-4	이옥수	근저당 (북부농업 협동조합)	
6	주상면 내오리	193	답	답	784	148	경남 거창군 주상면 오무1길 35-4	이옥수	근저당 (북부농업 협동조합)	
7	주상면 내오리	605	답	답	134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2, 302동 803호(부암동, 서 면동일파크스위트 3차)	백덕균		

	0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주상 오	무동 굴곡도	로로 개링	냥공사			
② 사 업 위 치	경남 거 <sup>:</sup>	창군 주상면	년 오무 <b>미</b>	l을 일	원		
③ 사업시행자	거창군수	∸(건설과 도	로담당	)			
④ 이 의 신 청	성 명			생년	크월일		
제 출 자	주 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의거 보상계획 열							의 규정에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 인)	
거창군수 귀	ōŀ						

### 거창군 공고 제2018-1113호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거 창 군 수

####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 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도시재생 추진 체계 구축(안 제3조 ~ 안 제9조)
- 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안 제10조 ~ 안 제13조)

### 3. 의견 제출

-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라. 의견제출할 곳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 거창군청(도시건축과) 【우편번호 : 50132, 전화 : 055-940-3561, FAX : 055-940-3579】
- 4. 그 밖에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거창군청 홈페이지 (<a href="http://www.geochang.go.kr/">http://www.geochang.go.kr/</a>) 「입법예고」란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거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거창군 계획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과려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 재생지원센터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다.
  -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 제7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 3. 상공회의소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 4. 시민단체 대표
  -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 3.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 2. 제1호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제9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

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 체이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

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X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 적)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	--------	------	-----	---	-----	----	-----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u>o</u>	 기 견	비고